

부록

징수대상자 의견조사 설문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도시정책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지역 현안에 관한 조사 분석과 정책 대안 개발을 통하여 서울시정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교통유발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 교통정책 및 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0월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김순관 박사(선임연구위원), 장지은 연구원

조사수행기관 : (주)리서치플러스

조 사 문 의 : (주)리서치플러스 연구본부 본부장 장현중 (02-312-0884)

■ 기초 사항

SQ1	응답자 관계	① 건물주 ② 건물 관리자	
SQ2	건물 소재지	▶ 건물 명 : _____ ▶ 주소(도로 명) : 서울특별시 _____ 구 _____ (층 호)	
SQ3	건물 용도	▶ 귀하께서 소유 또는 관리, 입주하고 계신 건물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건물의 주요용도 순서대로 2개까지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업무시설 ② 판매시설 ③ 근린생활시설 ④ 의료시설 ⑤ 관람집회시설 ⑥ 교육연구시설 ⑦ 숙박시설 ⑧ 기타 (기입 :)	
SQ4	건물 (영업장) 특성 관련	▶ 면적	_____ m ² ▶ 이용객 수 하루 평균 _____명
		▶ 운영 요일	① 매일 ② 평일만 ③ 기타 운영요일에 체크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운영 시간	_____시 _____분 ~ _____시 _____분
		▶ 종업원 수	_____명 ▶ 주차 가능 대수 총 _____대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부과되고 있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의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장 제2조)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산정기준	•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 계수(용도별 구분) : 0.47 ~ 10.92 - 단위부담금(면적별 구분) : 700원(3천㎡ 이하)~1,200원(3만㎡ 초과)(2016년 기준, 서울시)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 포함)</th> <th colspan="7">연도별 단위부담금(1㎡당)</th> </tr> <tr> <th>2014년</th> <th>2015년</th> <th>2016년</th> <th>2017년</th> <th>2018년</th> <th>2019년</th> <th>2020년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3천 제곱미터 이하</td> <td>700원</td> <td>700원</td> <td>700원</td> <td>700원</td> <td>700원</td> <td>700원</td> <td>700원</td> </tr> <tr> <td>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td> <td>700원</td> <td>800원</td> <td>900원</td> <td>1,000원</td> <td>1,100원</td> <td>1,200원</td> <td>1,400원</td> </tr> <tr> <td>3만 제곱미터 초과</td> <td>800원</td> <td>1,000원</td> <td>1,200원</td> <td>1,400원</td> <td>1,600원</td> <td>1,800원</td> <td>2,000원</td> </tr> </tbody> </table>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 포함)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 제곱미터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 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 포함)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 제곱미터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 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재원 사용처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기반체계 구축사업 :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통합 환승 할인 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자전거도로 건설 등 •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보행환경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등																																							
경감대상	• 30일 이상 미사용(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50% 경감), 서울시 경감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설물 - 도촉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경감조례 제6조																																							

문1. 현재의 건물에 임차인이 있습니까?

- ① 임차인 있음 (☞ 문1-1번으로)
② 임차인 없음 (건물주가 건물 전체 이용) (☞ 문2번으로)

문1-1. 귀하께서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어떻게 납부하고 계십니까?

- ① 건물주(또는 관리자)가 고지금액을 전액 부담 (임대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② 고지금액에 따라 임차인이 전액 부담 (임대료에 포함 안됨)
③ 고지금액에 따라 임차인이 일부 부담 (임대료에 포함 안됨)
④ 교통유발부담금의 대략적인 금액을 고려하여, 임대료에 포함
⑤ 기타 ()

(☞ 문1-1에서 “②~④”에 응답한 경우에 한해 문1-2번 응답)

문1-2. 귀하께서는 임차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납부금액, 부과비율, 납부방법 등)하여 임차인과 같등이나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약간 있다 ④ 자주 있다

■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에 참여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현황**

구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대상	최대 경감률	내용
1	승용차 요일제	종사자 이용자	20%	요일, 승용차번호에 따라 시설물 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
	승용차 5부제		20%	
	승용차 2부제		30%	
2	주차장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30%	시설물 내 승용차 진입 시 주차요금 부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 징수)
3	주차장축소	시설물 소유자	20%	시설물 주차장 주차면수 축소 (최소 10면 이상)
			30%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축소 (2016년 신설)
			50%	주차면수 “0” (경감률 : 2015년 20% → 2016년 50%)
4	주차유도시스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종사자 이용자	10%	시설물 주차장내 주차유도시스템 설치, 운영 및 정보제공 (2015년: 주차유도관리시스템 → 2016년: 주차정보제공시스템)
5	자전거이용	종사자	20%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 이상 (종사원 100인 이하는 최소 5명 이상) 참여
6	유연근무제	종사자	20%	종사자의 30% 이상이 시차출근 (09:00시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가 나게 출근시간 조절) 참여,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 근무 실시 (2015년 100인 이상 → 2016년 50인 이상)
7	통근버스	종사자 (100인 이상)	25%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수단 제공
8	셔틀버스	종사자 이용자	15%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수단 제공
9	업무택시	종사자	20%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10	나눔카이용	종사자 이용자	10%	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 제공 및 나눔카 이용 (2016년 신설 프로그램)
11	기타	종사자 이용자	10%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문2. 귀사에서는 **2015년도**에 위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하나라도 참여**하였습니까?

- ① 참여하였다 (☞ 문2-1번으로) ② 참여하지 않았다 (☞ 문2-4번으로) ③ 모름

(☞ 문2에서 “① 참여함”으로 응답한 경우에만 문2-1 ~ 2-3번 응답)

문2-1. 2015년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 ② 참여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이외에 다른 혜택이 있어서
- ③ 사업장 소재지의 차량 통행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 ④ 기타 의견 (기입 : _____)

문2-2. 귀사에서 2015년에 참여하셨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구분	감축 프로그램	내용	참여 여부
1	승용차 부제	요일 승용차번호에 따라 시설물 내 승용차 진입 제한	① 참여 ② 비참여
2	주차장 유료화	시설물 내 승용차 진입 시 주차요금 부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 징수)	① 참여 ② 비참여
3	주차장 축소	시설물 주차장 주차면수 축소 (최소 10면 이상)	① 참여 ② 비참여
4	주차유도 시스템	시설물 주차장내 주차유도 시스템 설치	① 참여 ② 비참여
5	자전거이용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 이상 (종사원 100인 이하는 최소 5명 이상) 참여	① 참여 ② 비참여
6	유연근무제	종사자의 30% 이상이 시차출근(09시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절) 참여,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재택근무 실시	① 참여 ② 비참여
7	통근버스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수단 제공	① 참여 ② 비참여
8	셔틀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수단 제공	① 참여 ② 비참여
9	업무택시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① 참여 ② 비참여
10	기타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① 참여 ② 비참여

문2-3.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소재지의 교통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효과가 있다 ② 다소 효과가 있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효과가 없다 ⑤ 전혀 효과가 없다

(☞ 문2-3번 응답 후 문3번으로 가시오)

(☞ 문2번에서 “② 참여하지 않았다”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문2-4번 응답)

문2-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참여가 번거로워서 ②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너무 적어서
- ③ 참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④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 몰라서
- ⑤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⑥ 기타 의견 (기입 : _____)

문3.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높이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적극 참여하겠다 ② 다소 참여의향 있다 ③ 참여의향 없다 ④ 모름

(☞ 문3번에서 참여하겠다(①~②)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문3-1번 응답)

문3-1.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3개까지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① 승용차부제 (요일제, 5·2부제) | ② 주차장유료화 | ③ 주차장 축소 |
| ④ 주차정보제공시스템 | ⑤ 자전거이용 | ⑥ 유연근무제 |
| ⑦ 통근버스 운영 | ⑧ 셔틀버스 운영 | ⑨ 업무택시 |
| ⑩ 나눔카 이용 | ⑪ 기타 (구체적으로 :) | |
| ⑫ 없음 | | |

(☞ 문4번부터는 모두 응답)

문4.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로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역별 교통 혼잡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혼잡도에 따른 차등 부과에 매우 찬성한다 ② 혼잡도에 따른 차등 부과에 다소 찬성한다
 ③ 혼잡도에 따른 차등 부과에 반대한다 ④ 기타 ()
 ⑤ 모름

문5.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6.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교통량 감축을 위해 기존의 프로그램 이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할 내용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